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9,843,933,528	295,318,006
일	반 회 계	8,773,162,077	263,194,862
특	별 회 계	1,070,771,451	32,123,144
	기 타 특 별 회 계	1,070,771,451	32,123,144
	의 료 급 여 기 금	620,987,331	18,629,620
	동 부 권	36,150,000	1,084,500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6,061,000	181,830
	소 방	406,703,616	12,201,108
	특정자원분 지역 자원 시설 세	869,504	26,08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86,997,36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265,4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